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6. 2.

제 출 자 : 경기도지사

□ 개정이유

- 지하수법에서 정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 등 시·도지사 사무 등이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의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 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안 제3조)

- 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안 제4조)

- 라.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하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하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맑은물관리과장, 지역정책과장, 재난민방위과장, 농업정책과장, 환경보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응용지질학·수문학·환경공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수리지질·응용지질·수문·환경·경제 또는 법률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6.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사무원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정)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가. 제3조제2항 :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나. 제6조제1항 :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로 수정